

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6(시공관리책임자의 통지기준 등) ①공사업자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 경우 공사 착수 7일 전까지 또는 변경하는 경우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법 제17조에서 규정한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.

②제1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, 팩스, 전자우편 및 법 제31조제6항의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 등으로 할 수 있다.

제16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6조의2(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등) ②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은 10억으로 한다. 다만, 법 제13조에 따른 국가등이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하는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.

부 칙

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2조의6 <신 설>	제12조의6(시공관리책임자의 통지기준 등) ① 공사업자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 경우 공사 착수 7일 전까지 또는 변경하는 경우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법 제17조에서 규정한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.
제16조의2(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등) ①(생략)	제16조의2(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등) ①(현행과 같음)
②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은 10억으로 한다. 다만,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.	②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은 10억으로 한다. 다만, 법 제13조에 따른 국가등이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.
	< 부 칙 >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3 - 3896